

ACI 카드뉴스

#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와 관련 고려사항

February 13<sup>th</sup>, 2025



#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 위반 사례

감독당국은 25년 1월,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보도

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,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



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, 대표이사,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(3천만원 이하)를 부과받을 수 있음  
FY2023 조치 결과 회사(600~1,200만원), 대표이사·감사(300~600만원), 외부감사인(600~720만원)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



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,  
재무 상황 악화,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 중

# 1. 내부회계 미구축

## 위반사례

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(1천억원 이상)인 A사는  
22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었으나  
23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되어  
23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인

## 감사(위원회) 고려사항

###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/검토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!

#### ▶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/검토 대상

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		별도 K-SOX	연결 K-SOX <sup>(주1)</sup>
상장회사	2조원 이상	감사	감사
	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	감사	-
	1천억원 미만	검토	-
비상장회사	5천억원 이상 <sup>(주2)</sup>	검토	-

#### 참고 신규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바로 부담해야 하는가?<sup>(주3)</sup>

현행 규정 상으로 상장하는 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하는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적용된다.

(주1)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든 상장사에 도입되었으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는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23년, 5천억원 이상 29년, 그 외는 30년부터 적용

(주2)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,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및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적용

(주3) "6월 12일 발표된 「주요 회계제도 보안방안」 제고개선 진행상황", 금융감독원, 2023.12.13

## 2.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보고·기록 미비

### 위반사례

B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,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

### 감사(위원회) 고려사항

#### 新 평가·보고기준을 고려하여

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보고하고 기록하세요!

2024년 1월 1일부터 新 평가·보고기준을 시행하되,  
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(2025년부터는 의무 적용)  
新 평가·보고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·검토 대상회사에 모두 적용

#### ▶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

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→ 주주총회, 이사회, 감사(위원회)	평가보고서 감사(위원회) → 이사회
1)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2)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3) 자금위험 부정에 대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<sup>(주4)</sup> 등 추가	1)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2)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협의 등 추가 3) 평가보고서의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

→ 이사회 또는 감사(위원회)에 대면 보고하고 이에 대한 기록 관리 필요

(주4)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 회사 중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,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/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/기타 대형 비상장회사의 경우 2026년 적용 가능

## 3. 회생절차 신청 단계 미구축

### 위반사례

C사는 '23년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운영('24년에 회생절차 개시)

### 감사(위원회) 고려사항

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는  
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운영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!

회사의 인력구조, 회사 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 
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·운영·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(\*)에는  
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음<sup>(주5)</sup>

(\*) 과태료 면제 사례

- ① 과태료 부과 대상 회계연도에 위반회사의 임직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
- ②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

(주5)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9] 과태료 부과 기준 6번

## 4. 내부회계 인력 미확충

### 위반사례

D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였으나,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이 대부분 퇴사하였음에도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

### 감사(위원회) 고려사항

#### 내부회계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추세요!

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(상근이사 등)를 지정하고  
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 
제도의 설계·실행·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

**참고**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개정(24.09) 20조

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(이하 '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'라 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·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- ...(이하 생략)